

# ‘강남역 살인’ 사건의 여성혐오 논란과 수사상 시사점

Controversy over ‘Hatred for Women’ in ‘Gangnam Station Murder Case’ and Implications for Police Investigation

이 기 수\*

## 차 례

- |                        |                   |
|------------------------|-------------------|
| I. 서론                  | IV. 혐오범죄 여부의 검토 및 |
| II. 이론적 논의             | 경찰대응의 평가          |
| III. 수사의 진행경과와 여성혐오 논란 | V. 결론             |

### • 국문요약 •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은 경찰이 사건 당일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논란을 크게 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와 여성혐오 논란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혐오범죄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분석하여 경찰의 대응을 평가하고, 경찰수사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초기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었음에도 그의 진술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여성혐오’ 논란을 키웠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異常)범죄로 결론 낸 것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과 법원의 동일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동의나 수용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과제를 남겼다.

향후 경찰은 범죄원인 규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문적 원인 규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혐오범죄의 발생환경을 고려하여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사회 모두 이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범죄피해 관련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강남역 살인, 혐오범죄, 정신질환, 심리분석, 프로파일러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범죄는 사회적 병폐로부터 기인한다고 하지만 역으로 범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범죄는 그 자체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경찰의 대응을 위한 치안정책의 수립과 범죄에서 발견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경찰수사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은 특별한 사건으로서 학문적 접근을 통한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범인과 일면식도 없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 범죄를 당할 이유도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점에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크게 하락시켰다. 특히, 범인이 남성들은 그냥 보내고 여성만을 노렸다는 사실에서 여성들은 대단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찬반 그룹이 대립하며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수사의 측면에서는 사건발생 당일 범인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음에도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논란의 확산에 대응해야 하는 종래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를 접해야 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검거하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고 임무도 완수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범인을 사건발생 당일에 신속히 검거하여 그 자체로 매우 성공적인 수사라고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거기

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논란의 형성과 함께 경찰에게 수사기관으로서 또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그 동안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범죄자의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까지도 수사기관의 역할임을 시사해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점은 최근 원인이 과거 전통적인 범죄와 다르고 명확치 않은 이상(異常)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강남역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와 ‘여성혐오’ 논란의 진행경과를 고찰하고, 혐오범죄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분석하여 경찰의 대응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수사에 주는 시사점을 밝혀 향후 수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혐오범죄의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경찰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와 언론의 보도 내용, 경찰 내부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와 경찰의 수사진행사항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의 ‘여성혐오’ 논란과 관련한 경찰의 심리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혐오범죄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분석하여 경찰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사건이 경찰수사에 주는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논의

### 1. 혐오범죄의 개념 및 유형

혐오범죄<sup>1)</sup> 또는 증오범죄(이하 편의상 혐오범죄로 칭함)란 그 기저에

‘증오’라는 가치체계에 기반을 둔 반사회적이고 형법상 비난가능성 있는 일련의 행위 태양들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그러나 혐오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혐오’나 ‘증오’의 개념이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어렵다. 때문에 국가마다 혐오범죄의 행위들이 매우 다양하고 문화적·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일 수 있다. 혐오범죄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우익 폭력이나 외국인을 증오하는 폭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단순히 종교적 폭력만을 포함’하고 있다.<sup>3)</sup>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인종 사회로의 변화가 외국인 혐오에 의하여 동기화된 폭력행위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이를 계기로 2001년 경찰은 범죄유형에 ‘혐오범죄’라는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신설하였다. 비록 형법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실무상 공식적인 범죄유형으로 ‘혐오범죄’가 신설되었고, 이는 경찰의 범죄파악과 예방적 관점에서 보다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sup>4)</sup> 또한 최근 극우주의 조직 NSU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2014년에는 극우주의 범죄행위를 포함한 혐오범죄의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목적으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sup>5)</sup>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이나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인간

1) ‘Hate Crime’을 번역한 것으로 ‘혐오범죄’ 또는 ‘증오범죄’로 해석함.

2) 김혜정, 권주혁, “증오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고찰”, 영남법학 제36호, 2013, 94쪽.

3) 김혜정, 권주혁, 위의 글, 93쪽.

4) 김지영, 이재일,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4, 2011, 35-38쪽.

5) Stellungnahme des Detuschen Anwaltvereins durch den Ausschuss Strafrecht, Stellungnahme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von Empfehlungen des NSU Untersuchungs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Stellungnahme Nr. 44/2014, 2014, 8쪽;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

경멸을 목적으로 할 경우 양형사유에 추가하였다.<sup>6)</sup>

한편 미국에서는 흑인을 증오하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을 기술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종교, 민족, 성지향적 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sup>7)</sup> 특히 미국의 혐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 Act)<sup>8)</sup>에서는 “살인, 치사, 강간, 폭력, 위협, 방화 그리고 재물의 손괴나 파괴 등의 범죄를 포함하는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민족색을 바탕으로 한 편견의 증거가 분명한 범죄”로 혐오범죄를 규정하고 있다.<sup>9)</sup> 성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전체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여성혐오’ 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로 동성애 혐오 등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다. 정신질환이 기반이 된 혐오유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 2. 정신질환과 혐오범죄

국내에서는 혐오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나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나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혐오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미국은 혐오범죄방지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sup>10)</sup>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혐오범죄 유형분류를 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항”, 경찰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5, 168쪽 재인용.

6) BT-Dr. 18/3007.

7)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4, 80쪽.

8) 이 법에 따라 미국의 범집행기관은 범죄인의 편견성향을 살인과 치사, 강간, 폭행, 반달리즘(vandalism) 등 11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https://ucr.fbi.gov/hate-crime/2015>).

9) 양문승·이훈재,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제 24권 제4호, 2008, 170쪽 이하.

10) 각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혐오범죄 규정을 갖고 있다(김지영, 이재일, 앞의 글, 40쪽).

혐오범죄 유형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는 그것이 혐오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정신질환범죄로 분류하지 혐오범죄의 유형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혐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가진 편견 즉, 인종, 종교, 민족,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한 편견이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 Jacobs와 Potter는 편견을 심한 편견과 경한 편견으로 나누고, 인과관계의 정도도 강력한 인과관계와 경한 인과관계, 긴밀한 인과관계 등으로 나누어 혐오범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sup>11)</sup>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일부 정신질환은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인식되고 있다. 특히,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s)가 그중 한 유형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피해망상은 분노, 원한, 때로는 폭력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범죄행동, 특히 폭력적인 범죄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2)</sup>

정신질환과 관련해 발생한 외국의 범죄사례를 고찰해보면 '혐오범죄' 여부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미국에서 1968년에서 이듬해 1969년에 걸쳐 연쇄살인을 저지른 제롬 브루더스는 어려서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행동과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유년기에는 여자의 물건(신발, 속옷 등)을 훔치거나 여자를 위협해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 미육군에 입대해서는 밤마다 한국 여자가 자기 침대에 들어온다는 망상에 빠져 강제 전역 당했다. 결혼 이후 몇 년이 지난 1968년부터 이듬해에

11) James B. Jacobs, Kimberly Potter(2000), Hate crimes: criminal law & identity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2) 이수정,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실태 및 문제점",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세미나 자료집, 2016. 6. 17. 13쪽; 외국의 연구에서도 폭력행위를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만성 망상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장동원, "정신질환과 범죄", 형사정책연구제1권, 1990, 100-101쪽).

걸쳐 10대, 20대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강간하고 살해한 후, 유방을 잘라 내거나 신체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일삼았다. 그는 전문의에게 정신이상으로 공식 판정받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인성장애가 인정되었고, 변호인은 중신형이 선고된 재판에서 망상증 등을 근거로 정신이상임을 강하게 주장했다.<sup>13)</sup>

194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Mad Bomber’ 사건의 범인은 10년에 걸쳐 미국의 곳곳에 폭탄을 설치해 대중을 위협했고, 초기 폭발하지 않았던 폭탄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성이 커지며 궁극에는 중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프로파일러 제임스 브뤼셀은 범인은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를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범죄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망상장애의 경우 원인을 품는 사람들 중 으뜸이라고 주장했다.<sup>14)</sup> 범인이었던 조지 매트스키는 체포된 후 자신이 범인임을 순순히 시인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부상당했음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인정되어 범정에 서지 않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sup>15)</sup>

정신질환에 의한 이 두 사례는 여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표현하거나 대중 또는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 대단한 분노를 표했지만 이 범죄를 혐오범죄(Hate Crime)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개념정의에 의할 때 혐오범죄는 증오나 혐오라는 가치체계에 직접적인 기반을 두고 발생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는 분노나 혐오 이전에 정신질환 혹은 개인적 심리장애 등이 근저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13) 브라이언 이니스·이경식 역, 범죄심리와 과학수사 프로파일링, Human & Books, 2005, 203-209쪽.

14) 콜린 에반스·김옥진 역, 세계적인 과학수사,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9, 19쪽.

15) 브라이언 이니스·이경식 역, 앞의 책, 47-53쪽.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 3.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에서는 아직 특정 범죄사례에 대하여 혐오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다만, 혐오범죄에 관한 예비적 성격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정념은 2011년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sup>16)</sup>에서 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과 「혐오범죄통계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혐오’, ‘차별’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그 후 이정념은 2015년도의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sup>17)</sup>에서 혐오범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국내에서의 논의가 주로 ‘차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혐오범죄의 개념, 속성, 유형 등 관련 입법에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11년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sup>18)</sup>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서는 미국, 독일의 증오범죄 발생현황과 대응을 고찰하고,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증오범죄(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외국인들의 국적, 인종, 종교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조사하여 국내에서의 혐오범죄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16) 이정념,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 및 혐오범죄 통계법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9권 제2호, 2011, 249-274쪽.

17)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5, 165-186쪽.

18) 김지영, 이재일,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012년 조철욱은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sup>19)</sup>에서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실태를 기술하고, 국내 증오범죄의 실태 파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증오범죄의 존재를 전제로 미국과 같은 증오범죄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자료관리 체계의 확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2013년 김혜정, 권주혁은 “증오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관한 고찰”<sup>20)</sup>에서 미국의 증오범죄 유형을 토대로 국내의 증오범죄 유형화와 원인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형사정책적 과제로 증오범죄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2016년 승제현은 “젠더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sup>21)</sup>에서 미국과 독일의 대응을 소개하고, 국내에서의 대응방안으로 증오범죄를 가중처벌하기 보다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국내에서의 혐오범죄(또는 증오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국과 독일에서의 혐오범죄 대응책을 소개하고, 국내에서의 대책을 모색하는 내용의 논문들이 발견된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혐오범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거나 수사상의 시사점을 논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과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 조철욱,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경찰학연구제12권 제1호, 2012, 37-76쪽.

20) 김혜정, 권주혁, “증오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고찰”, 영남법학 제36호, 2013, 91-112쪽.

21) 승제현, “젠더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2호, 2016, 35-64쪽.

## Ⅲ. 수사의 진행경과와 여성혐오 논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남, 34세)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식당인 '○○상회'에서 종업원(주방보조)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6. 5. 17. 01:0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점 건물 2층 화장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길이 약30cm)로 피해자 하모씨(여, 23세)의 왼쪽 가슴, 어깨, 등, 허리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경찰은 사건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는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평소 피의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하여 정확한 범행동기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sup>22)</sup>

### 2. 수사의 순차별 진행경과

#### 1)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

사건발생 직후인 5. 17. 01:20경 '일행이 화장실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

22) 고정훈,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을 통해 본 묻지마 범죄분석", 수사연구 제393호, 2016, 12-26쪽 ; 서초경찰서,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검거", 보도자료, 2016. 5. 17.

병원 응급실로 후송·치료 중 사망하였다. 검안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슴과 어깨, 허리 등 온몸에 자창 13곳이 발견되었고, 양손에 방어흔 8곳을 포함 모두 21개소에 자창을 입었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좌측흉부 자창으로 인한 폐손상으로 추정하였다.<sup>23)</sup>

## 2)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찰은 범행현장인 건물의 CCTV 녹화내용을 분석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피의자가 일하는 ‘○○상회’를 관리하는 지배인 박모씨를 통해 피의자 김모씨(남, 34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다. 수사팀이 신정동의 주거지와 근무지인 ‘○○상회’ 인근에 잠복하던 중 사건당일 오전 10시경 근무지 앞에 나타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피의자의 오른 손 바닥에 베인 상처를 확인하였고, 우측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인 식칼을 증거물로 압수하였으며, 바지에서 혈흔을 확인하고 식칼과 바지를 국과수에 긴급감정 의뢰하였다.<sup>24)</sup>

## 3) 피의자 조사

피의자는 검거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 등 확보된 증거를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하기 시작했다. 피의자는 조사 도중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는 등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해 정신병력에 대하여 질문하자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관이 피의자

23) 서초경찰서 보도자료(2016. 5. 17): 이지훈, “30대남,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동아일보, 2016. 5. 18.

24) 서초경찰서, 보도자료(2016. 5. 17).

의 집에 전화하여 모친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정신병력은 쉽게 확인되었다. 모친에 따르면 피의자는 과거 중학교 때부터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6차례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sup>25)</sup>

범행을 한 동기에 대하여 피의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포차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때문에 주방으로 밀려나가 여자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수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는 다른 직원들과 별다른 마찰이 없었고,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sup>26)</sup>

### 3. 여성혐오 논란의 전개와 경찰의 대응

#### 1) 추모와 여성혐오 논란의 확산

사건발생 다음날인 5. 18일 한 누리꾼이 이 사건관련 보도를 접하고 “강남역 살인사건 공론화(@0517aml)”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여성 폭력·살해에 이제 사회가 답할 차례”라며 “강남역 10번 출구에 국화꽃 한 송이와 쪽지 한 장을 적어 피해자를 추모하자”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SNS를 통해 사건내용이 빠르게 전파되었고, 추모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확산되었다.

이후 사건 현장 인근인 강남역 10번 출구 유리 벽면에는 추모글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놓게 되었고, 여기에 써진 글들은 ‘여자라서 죽었다’, ‘묻지마 살인의 타깃은 왜 항상 약자인 여성인가’, ‘여성혐오는 이제 여

25) 고정훈, 앞의 글, 23-24쪽.

26) 이하나, “30대 남성, 강남 한복판서 여성혐오 살인”, 여성신문, 2016. 5. 18; 이지훈, 앞의 기사, 동아일보, 2016. 5. 18; 고정훈, 앞의 글, 24-25쪽.

성의 생존 문제입니다’ 등 여성혐오 관련 주장들이 많았다.<sup>27)</sup> 이러한 내용들은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전파되며 ‘여성혐오’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후 언론에서도 기사 및 보도제목에 ‘여성혐오’를 사용하게 되었고,<sup>28)</sup> 심지어 제목에서 이 사건을 이미 여성혐오로 결론 낸 기사<sup>29)</sup>도 등장했다.

## 2) 여성혐오 논란의 양상

이 사건 발생 후 개인에 대한 이례적인 추모 열풍이 불었고,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혐오범죄(또는 증오범죄, Hate Crime)’, ‘여성혐오’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성혐오 논란이 단순히 범죄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여성들을 하위구조에 위치시키고, 차별과 무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로 피해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30)</sup> 이런 구조에서 여성들의 내면에 오래도록 응축되어 있던 분

27) 주영재, “강남 공용 화장실 살인사건 희생자 추모 움직임 확산”, 경향신문, 2016. 5. 18.

28) 5.18일 저녁방송과 19일 조간에서 ‘여성혐오’를 사용한 언론들이 크게 늘었다. [SBS(강남역 ‘여성 타깃’ 살인극), MBN(여성 혐오 피해자였다), KBS(묻지마 여성살인), TV조선(여성 혐오 범죄에 충격), 경향신문(여성이란 이유로 ‘묻지마’ 아닌 ‘여혐’ 살인). 이후 5개월이 지난 10월 26일 현재까지도 네이버에서 ‘여성혐오’만으로 검색했을 경우 수만 건, ‘강남역 살인&여성혐오’으로 검색했을 경우 사건발생 이후 3천건이 넘는 뉴스가 검색되고 있다. 사회적인 논란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알 수 있으며 그것은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29) 이혜리, “묻지마 살인’ 아니라 여성혐오 살인입니다”, 경향신문, 2015. 5. 18; 이하나, 앞의 기사, 여성신문, 2016. 5. 18.

노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분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기 범죄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다양한 범주로 여성혐오논란이 계속해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인터넷에서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갈리아'<sup>31)</sup>와 '위마드'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시위로도 이어졌다. '여성혐오 전담 수사단을 꾸려 달라'는 시위가 펼쳐지고, 홍대 앞에서는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시위가 20일 이상 개최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노동당과 정의당 여성위원회 등 정치권 여성모임과 대학생 모임, 시민단체 등도 참여했다.<sup>32)</sup> 이후 인터넷과 오프라인 상에서 극단적인 논란으로 치달으면서 폭력사태로 변질되기도 하였고,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sup>33)</sup>

이처럼 논란은 여성네티즌과 여성단체, 이에 반발하는 남성네티즌 등의 대결양상을 보이는 등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문제, 범죄의 피해를 주로 입게 되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확보문제에도 관심을 높이고 논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sup>34)</sup>

30) 정지우,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과 혐오사회”, 네이버 블로그(leekyung21c), 2016. 5. 26.

31) 메갈리아의 전략은 여성혐오의 틀거리는 그대로 두고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는 '미러링'을 실천하였다. 예를 들면 '김치녀'에 '한남충', '스시녀'에 '갓양남'으로 대응했다(위키백과).

32) 뉴시스, “20일 넘게 이어지는 여성혐오 반대집회”, 2016. 6. 6.

33) 구민정, “강남역 사건 100일”, 헤럴드경제, 2016. 8. 24; 뉴시스,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발생 100일-식지 않은 논쟁, 2016. 8. 22.

34) 국회에서도 5월 26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연이어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3) 경찰의 대응 – 심리면담 실시와 결과발표

경찰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 범죄’라는 주장과 사회적 논란은 거세어지기만 했다.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비등한 상황에서 수사를 책임진 경찰에게는 새로운 대응과 역할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수사과정에서 이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해 판단해주는 것이었다.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여성이 무시해서’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범죄로 볼 것인지, 여성혐오를 주(主) 원인으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혐오’ 논란은 건잡을 수 없는 여성들의 분노와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항의성 시위로 번질 위기감마저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첫째, 그 동안 경찰에서 선발하여 수사사건 해결에 성과를 축적해 오던 범죄분석관 즉,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sup>35)</sup> 둘째는 그 동안의 수사관행상 통상 수사책임자<sup>36)</sup>가 하던 언론브리핑을 기존의 관행과 달리 프로파일러에게 직접 하도록 한 것이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그 동안 대개는 수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범죄 및 범죄자 Data를 축적하는

---

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35) 경찰청은 2000년에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 최초로 범죄분석관을 지정한 이후, 2004년에는 경찰청 과학수사과 내에 ‘폭력적 범죄분석팀(ViCAT)’을 설치하였고, 2005년부터는 심리학, 사회학을 전공한 전문인력 30명을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으로 특채하여 각 지방경찰청 범죄분석팀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인력규모는 이후 퇴직과 신규채용 등으로 변동되고 있음).

36) 경찰서의 경우 형사/수사과장 또는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의 경우 광역수사대장 등.

등 크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의 일을 해왔다.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직접 수사브리핑을 하는 것은 경찰내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전문적 판단, 즉 심리상담을 필요로 했고, 그에 대한 브리핑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프로파일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통해 프로파일러의 직접 브리핑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발생 이틀 뒤인 5. 19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면담을 실시하였다. 1차 면담에서는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정신병적 증상이나 망상내용을 확인하였고, 2차 면담에서는 총 5명의 프로파일러가 심층면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sup>37)</sup>

경찰은 범죄발생 5일 후인 5월 22일 2차에 걸친 프로파일러의 심층면담과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밝힌 대로 발표는 프로파일러가 직접 하였으며, 심리분석 결과 이 사건은 ‘정신질환에 의한 문지마범죄’<sup>38)</sup> 유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sup>39)</sup> 경찰은

37) 서초경찰서 수사사례 자료(2016. 6월)

38) 경찰청에서는 그 동안 범죄사건 사례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의 이상성,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 또는 대상이 전치(displacement)되어 나타나거나 범행 동기 유발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 행위의 이상성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이상(異常)범죄’를 규정하고 그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①문지마형, ②분노·충동조절 실패형, ③기타 이상(비전형), ④정신병적 유형 등이다.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사건 중 이상범죄로 분류된 것은 46건이며 이중 문지마 21건, 충동분노 13건, 기타 비전형적 이상범죄 12건이었으며, 범죄자에게 조현병이 있는 경우는 전체 25건으로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 2016, 11-14쪽).

39) 서초경찰서 보도자료(서초동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심리분석 결과), 2016. 5. 22.

비록 초기 진술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의자가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여성혐오’를 범행 동기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IV. 혐오범죄 여부의 검토 및 경찰대응의 평가

### 1. 경찰의 심리분석과 범죄동기 판단

#### 1) 정신질환 관련

피의자의 외모는 평소 전혀 샤워를 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불량했고, 상당히 냄새가 나는 상태였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각을 자주 하거나 등교 전 현관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부모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않는 등 고립된 생활을 했고, 학교에서 정신과 상담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피의자는 2008년 처음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총 6회에 걸쳐 ‘편집 조현병’, ‘미분화형 조현병’ 등의 진단명으로 19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 일상생활의 여러 기능도 손상된 상태였는데, 직업이나 가정생활 영역 뿐 아니라 씻기 등의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증상인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질병인식 불능증’을 보였는데, 경찰조사에서도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담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는 피의자가 범행의 동기로 주장하는 여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고 있다.<sup>40)</sup>

40) 피의자의 정신질환 관련 상세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

면담 중 피의자는 여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례를 여러 가지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작년 초 윗집에서 새벽마다 여자 발소리가 들려 잠을 설쳤고,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쳐다보면 매번 여성이었고, 여성들이 일부러 자기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신을 지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벽에 들린 발소리가 여성의 것이 맞는지, 위와 같은 여성의 행동이 실제 자신을 향한 것이 분명한지 물어보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단지 '내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망상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진술 패턴과 매우 유사했다.<sup>41)</sup>

## 2) 범죄행동 관련

범행 시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조우한 후 욕설이나 폭행 등의 분노표출적 행동 없이 바로 살해 목적의 공격행동을 보였다. 이것은 목적적 공격 행동으로서 피해자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가해자의 개인적인 이유에 기한 범행 동기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범행동기가 유발되는 반응적(표현적) 공격행동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의 목적성은 분명하였으나 범행의 세부적 준비나 도주계획 등 구체적 행동에서는 비체계적이고 무계획적인 특성을 보였다. 면담팀은 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sup>42)</sup>

범행도구는 일하던 식당 주방에 있는 칼이 보여 집어 들고 나왔고, 범행

---

팀,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심리 면담”, 수사연구, 2016 JULY, Vol.393, 27-31쪽 참조.

41) 서울지방법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앞의 글, 29쪽.

42) 범죄행동 관련 상세한 분석내용은 서울지방법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앞의 글, 31-33쪽 참조.

장소는 CCTV를 확인하면 바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근무지 화장실을 선정하였으며, 마스크, 장갑 등 최소한의 신원은 폐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범행 후에도 무계획적으로 도주하였고, 다음 날 범행현장 인근으로 출근하다가 바로 검거되었다. 이런 비체계적인 범죄 행동은 정신질환 범죄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성이다.<sup>43)</sup>

요컨대 피의자는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19개월이나 입원한 경력이 있으며, 2016년 초에 치료약 복용을 중단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2003년 이후로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는데 2년 전부터는 그 내용이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것으로 변화하였다.<sup>44)</sup> 심리면담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행동에서는 목적적 공격행동을 보였지만 범행 준비와 실행, 도주 등 세부계획성에서는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에서 나타나는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계획적인 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동기에 대하여 ‘피의자의 망상적 사고에 기한 것으로, 표면적인 범행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요인이 없는 사건으로 정신질환(조현병)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45)</sup>

## 2. 검찰과 법원의 판단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피의자를 28일간 국립법무병

43)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앞의 글, 31쪽.

44) 서초경찰서 보도자료(서초동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심리분석 결과), 2016. 5. 22.

45) 경찰의 분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의 분석자료(수사연구, 2016 JULY, 27-33쪽) 참조.

원에 보내 정신상태를 분석했다. 검찰은 7월 10일 피의자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의 원인에 대하여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남들이 쳐다본다’, ‘여성들이 길에서 앞을 가로막아 지각을 했다’ 등 망상에 시달리는 신경과민 증세를 보여왔다’고 보고, 피의자가 피해망상과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증상이 점차 악화한 것을 범행의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피의자에게서 여성비하, 여성 차별, 여성에 대한 편견과 같은 여성혐오적인 ‘신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여성관련 자료와 성인물을 여러 차례 검색하고, 어머니로부터 소개받은 여성과 잠시 교제한 경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여성을 ‘싫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sup>46)</sup>

법원은 1심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판결문에서 “정신감정의는 김씨가 여성혐오가 아닌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성혐오라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sup>47)</sup>

이와 같이 검찰은 전문병원에 피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정신상태와 범죄원인을 분석하였고, 법원은 정신감정의의 감정을 통해 각각 일치하게 피의자의 범죄동기가 ‘여성혐오’가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46) 김청아, “말뭉던 강남역 문지마 살인, 검찰 ‘여성혐오 범죄 아니다’ 결론”, 데일리한국, 2016. 7. 10; 이하나, “경찰 이어 검찰도 ‘강남역 살인, 여성혐오 범죄 아니다’ 논란”, 여성신문, 2016. 7. 10.

47) 양지혜,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재판부 ‘김씨는 여성혐오 아니라 ...’”, 조선일보, 2016. 10. 14; 시선뉴스,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여성 혐오 범죄 아냐”’, 2016. 10. 14.

### 3. 경찰의 대응에 대한 평가

#### 1) 범죄동기의 판단

이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한 범죄라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약자의 안전보장 요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볼 수 없으며,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범죄(문지마 유형)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은 경찰의 수사종료 후 전문병원에 입원시켜 장기간 정신감정을 실시한 검찰의 판단 및 전문의로 하여금 감정토록 한 법원의 판단과도 같았다.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독일 등 일찍이 ‘혐오범죄’를 규정했던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신질환과 관련한 혐오범죄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떠한 집단의 그릇된 신념이나 정상적인 개인의 가치관과 연관을 맺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보인 피해망상으로 인한 폭력적 범죄의 발현은 정신질환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여성이나 대중을 향해 분노와 혐오를 표출한 범죄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이를 혐오범죄로 보지 않고 정신질환 범죄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강남역 살인사건’을 혐오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범죄로 본 경찰의 판단은 검찰, 법원과 일치하고, 이러한 판단이 이론적인 분석이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부적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수사상 경찰의 대응에 대한 평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대응에는 전례가 없었던 조치들

이 있었고, 향후에도 범죄의 원인과 관련하여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4가지 측면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수사실무상 경찰의 이례적인 대응이 전개되었다. 경찰은 '여성혐오' 논란이 일자 범죄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발 빠르게 심리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감정이나 심리면담 등이 일반적인 범죄사건의 원인과악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신속한 분석과 발표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찰 내의 프로파일러는 2005년 채용을 시작한 이후 주로 수사관들의 배후에서 범죄자나 범죄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 이유로 조직 내에서는 프로파일러의 활동과 성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프로파일러를 공개적으로 심리면담에 참여시키고 수사책임자가 일괄 언론브리핑을 하는 기존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로 하여금 직접 브리핑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 내 프로파일러의 존재와 활약을 알리고,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sup>48)</sup>

48) 이 점과 관련하여 경찰의 프로파일러가 정신질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프로파일러는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감정의 판단이나 피의자의 정신병력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서 축적한 범죄사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병력 여부, 범죄 당시 피의자의 행태, 범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의나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영역은 엄연히 수사기관의 책임영역이고, 정신과 의사도 범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로파일러가 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경찰은 향후 이 기능의 전문성

셋째, 이 사건의 수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초기단계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피의자의 범행동기 관련 진술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자극적인 언사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보도됨으로 인해 정확하지 못한 사실을 기초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따라서 수사초기 범행동기가 불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의 동기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나 범행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행의 경우는 언론보도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준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논란이 확대일로에 있던 상황에서 경찰의 분석과 발표는 당시 경찰에게 요구되었던 시급한 역할의 수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성차별, 약자의 안전보장 문제 등 불만요인들이 여성들의 사고에서 응축되어 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마치 폭발하듯 분출되었고, 경찰의 분석과 발표도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법원이 전문적 분석을 통해 일치되게 ‘혐오범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음에도 여성일반이 그에 충분히 동의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수사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항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 3) 향후 경찰수사의 과제

먼저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원인규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수사관행으로 보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의 일차적 임무는 범죄자를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

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할을 다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범죄의 원인은 대부분 원한이나 금전욕 등으로 단순화되었고, 범죄자의 복잡한 심리 등은 수사기관이 논할 대상이 아니고, 전문가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사실 또 그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죄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고, 범죄동기가 불명한 사건이 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sup>49)</sup>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정신질환자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sup>50)</sup> 또한 이런 사건들은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게다가 때로는 이 사례와 같이 사회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사회적인 논란을 크게 일으키고 내분과 혼란을 조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에서 범인의 검거 및 증거확보 외에 범죄의 원인 규명이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사관의 인식전환을 통해 수사의 전 과정에서 범인의 검거와 증거수집과 함께 범죄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범죄의 원인이 수사초기에 규명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되어질 경우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치안자원의 그릇된 배분으로 경찰의 정책이 실패에 이를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향후 수사에서 매우 중요시

49) 2016년도에 발생한 사례로 '강남역 살인사건' 외에도 '수락산 살인사건', '사패산 살인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50) 범죄위험 정신질환자가 최근 10년 간 5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동아일보, "물지마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10년새 최대 5배 가까이 경증", 2016. 7. 19).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이상(異常)범죄, 정신질환자의 범죄, 혐오범죄, 흉악범죄 등에 대하여는 전문인력이 수사초기 단계에서 참여해 범죄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의 프로파일러들을 대상으로 범죄원인 분석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시 의료계, 학계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죄원인 규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가 된 ‘혐오범죄’에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데에는 우리 사회에 ‘혐오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혐오범죄의 속성상 범죄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집단의 구성원에게도 공포와 충격을 주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sup>51)</sup>에 다수가 범죄의 공포와 피해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갖는다. 범죄의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외국인의 유입이 늘고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족, 종교, 문화 등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미국의 우방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국가 간의 갈등선상에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관련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단순 범죄와 다른 혐오범죄의 피해와 심각성에 주목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 경찰은 혐오범죄에

51)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경찰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5, 177-178쪽.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식적인 범죄유형에 혐오범죄를 포함시켜 관심과 범죄대응력을 제고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혐오범죄임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범죄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제 경찰수사의 임무가 될 것이다. 나아가 혐오범죄의 확산이 예상될 경우 미국의 사례처럼 입법을 통한 혐오범죄 대응 등 적극적으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설령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촉발된 여성피해 범죄나 사회적인 여성차별 등의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여성의 실질적 범죄피해<sup>52)</sup>, 여성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sup>53)</sup>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유영철 사건’이나 ‘강호순 사건’ 등 여성 혐오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sup>54)</sup>들을 경험했지만 그 후 정부정책에서 만족할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혐오범죄 여부와 별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혐오에서 기인하는 범죄의

52) 실제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5년도에 72.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에는 8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순양,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인식의 왜곡, 그 정점의 강남역 살인사건”, 한국여성신학 제83호, 2016. 18쪽).

53)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밤에 택시를 타고 범죄를 두려워하는 여성이 78%, 평소 성폭력 피해를 두려워하는 여성이 58%에 이르는 등 범죄피해에 대한 여성의 공포가 확인되었다[노성훈, “강남역 살인사건”에 따른 여성안전 확보 방안”, 국회 긴급토론회(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자료집, 2016. 5. 26. 33쪽].

54) 선행연구(조철욱, 앞의 연구, 김혜정·권주혁, 앞의 연구)에서 이 사례는 ‘여성혐오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예방과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포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V. 결 론

이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 ‘여성혐오’ 논란과 경찰의 수사상 대응을 살펴보고, ‘혐오범죄’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대한 분석과 함께 평가를 통해 향후 수사상의 과제 등을 논하였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여성을 혐오하는 편견에서 발생한 ‘혐오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異常)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도 그와 일치한다. 이러한 판단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론적 기준이나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부적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신속하게 범죄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심리면담을 실시하고, 여성혐오범죄 여부에 대하여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인 피의자의 진술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되어 큰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사법기관에 여러 과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사와 관련하여 범죄원인 규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확보해 수사초기부터 범죄원인을 정확히 밝힐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혐오범죄’가 갖는 심

각성에 주목해 혐오범죄의 개념과 유형분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사건을 통해 부각된 여성 혐오 내지 여성 대상 범죄, 여성이 갖는 범죄에 대한 공포 등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포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수사의 밀행성과 관련하여 사례의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어렵고, 유사한 형태의 선행연구 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범죄사례의 분석을 통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 정책대안 제시, 경찰수사의 발전 등을 위해 향후 이와 같은 형태의 수사사례분석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논문 접수 : 2017. 4. 17, 심사 개시 : 2017. 4. 21, 게재 확정 : 2017. 5. 30〉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4.

경찰청,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 2016.

#### 2. 논문

고정훈,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을 통해 본 묻지마 범죄분석”, 수사연구2016. JULY, Vol.393.

김지영 · 이재일,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11-14, 2011.

김혜정 · 권주혁, “증오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고찰”, 영남법학 제36호, 2013.

노성훈, “‘강남역 살인사건’에 따른 여성안전 확보 방안”, 국회 긴급토론회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자료집, 2016.

박상조 · 박지선, “언론의 범죄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제8권 제1호, 2013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심리 면담”, 수사연구, 2016 JULY, Vol. 393.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심리 면담”, 수사연구, 2016 JULY, Vol.393

승제현, “젠더혐오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2호, 2016

양문승 · 이훈재,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 제24권 제4호, 2008.
- 이수정,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실태 및 문제점”,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6, 6, 17.
-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5
- 이정념,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 및 혐오범죄 통계법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9권 제2호, 2011
- 장동원, “정신질환과 범죄”, 형사정책연구제1권, 1990.
- 조철옥,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경찰학연구제12권 제1호, 2012
- 조철옥,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페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4호, 2009.
- 최순양,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인식의 왜곡, 그 정점의 강남역 살인사건”, 한국여성신학 제83호, 2016

### 3. 기타

- 남인순 · 권미혁 · 정춘숙 · 표창원, 국회토론회 자료집-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2016. 5. 26.
- 남인순 · 권미혁 · 정춘숙 · 표창원, 국회토론회 자료집-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2016. 6. 9.

## II. 외국문헌

- 브라이언 이니스 / 이경식 역, 범죄심리와 과학수사 프로파일링, Human & Books, 2005.
- 콜린 에반스 / 김옥진 역, 세계적인 과학수사,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9.
- James B. Jacobs, Kimberly Potter, Hate crimes: criminal law & identity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Ⅲ. 기 타

- 서초경찰서 보도자료(2016. 5. 17/2016. 5. 22/2016. 5. 26).
- 구민정, “강남역 사건 100일”, 헤럴드경제, 2016. 8. 24; 뉴시스,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발생 100일-식지 않은 논쟁, 2016. 8. 22.
- 김청아, “말랐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 검찰 ‘여성혐오 범죄 아니다’ 결론”, 데일리 한국, 2016. 7. 10.
- 뉴시스, “20일 넘게 이어지는 여성혐오 반대집회”, 2016. 6. 6.
- 시선뉴스,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여성 혐오 범죄 아냐”, 2016. 10. 14.
- 이지훈, “30대남,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동아일보, 2016. 5. 18.
- 양지혜,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재판부 ‘김씨는 여성혐오 아니라 ...’”, 조선일보, 2016. 10. 14
- 이하나, “경찰 이어 검찰도 ‘강남역 살인, 여성혐오 범죄 아니다’ 논란”, 여성신문, 2016. 7. 10.
- 이하나, “30대 남성, 강남 한복판서 여성혐오 살인”, 여성신문, 2016. 5. 18.
- 이혜리, ‘묻지마 살인’ 아니라 ‘여성혐오 살인입니다’, 경향신문, 2015. 5. 18
- 조성진·강혜인·김기용, “경찰 정신분열 선긋기에 더 격화되는 여성혐오 논란”, 노컷뉴스, 2016. 5. 24.
- 조기선,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공간, 서울시청 이전에도 발길 꾸준”, 노컷뉴스, 2016. 5. 26.
- 주영재, “강남 공용 화장실 살인사건 희생자 추모 움직임 확산”, 경향신문, 2016. 5. 18.
- 정지우,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과 혐오사회”, 네이버 블로그(leekyung21c), 2016. 5. 26.

< ABSTRACT >

## Controversy over ‘Hatred for Women’ in ‘Gangnam Station Murder Case’ and Implications for Police Investigation

Lee, Ki-Soo

The so-called ‘Gangnam station murder case’ caused the controversy of ‘hatred for women’ socially, despite the accomplishment of arresting the criminal on the day of the incident.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progress of the case – related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controversy about ‘hatred for women’, evaluated the police’s response by analyzing the police judgment,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police investigation and future tasks.

In the early investigation of the case, it is regrettable that despite the mental illness of the suspect,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was exposed to the media as it was, and raised the controversy about ‘hatred for women’. However, unlike before the police’s prompt input profiler, psychological analysis, and profiler’s direct interviews can be regarded as appropriate responses. It is also correct that the case concluded as an abnormal crime caused by a mental illness, not a ‘hate (women) crime’, and at least the ‘hate crime’ debate directly related to the case has disappeared.

In the future, the polic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crime, and build a system that can inquire into the cause of crim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and type of hate crime according to the creation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In addition, both police and society should recogniz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ocial discrimination and crime damage of women and try to solve them.

◆ Key Words : Gangnam Station Murder Case, Hate Crime, Mental Illness, Psychological Analysis, Profiler.

